

소규모 사업장은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모 ('24.12.20.~'25.1.10.)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12월 2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력·예산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 안전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지역·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주요내용 >

○ (사업내용) 지역·업종별 협·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공동으로 지원

*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 (지원규모) 공동안전관리자 총 400명(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협·단체에 대해 운영비의 80%(월 250만원 한도)를 12개월간 지원 (~'25년 12월)

2년 한시사업으로 도입된 동 사업은 '24년 최초로 실시되어 90여 개의 협·단체에 소속된 공동안전관리자가 전국 3,600개 이상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단체가 소속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사례 1] 근로자 참여를 높여 안전문화 구축

“ㄱ협동조합 소속의 정○○ 공동안전관리자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상황별 예시와 사고사례를 포함해 이해도를 높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했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즉시 반영 및 안전제안함 도입 등으로 근로자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

[사례 2] 회원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지원

“ㄴ협회는 동 업종 실무경력이 평균 35년인 현장 전문가를 다수 채용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협회 자체적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회 내 안전전담부서 설치, 자체적인 현장동행평가, 산업재해 동향 조사 등을 통해 현장 작동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

*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운영('2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사망사고 미발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도에도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의 현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스티커, 미디어 제공 등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요

담당부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추진단 로드맵이행총괄팀	책임자	팀 장	박신원 (044-202-8864)
		담당자	사무관	이광일 (044-202-8866)



- (사업내용) 지역·업종별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고 복수의 소속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

*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 (지원규모) '25년 공동안전관리자 총 400명

- 사업주단체에 운영비(월 25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지원

* 2년간('23~'24년) 한시 운영

- 공동안전관리자에게 업무수행 매뉴얼, 전문화 교육 등 제공

《 공동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②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충족한 자

- (수행업무) 공동안전관리자는 관할 사업장에 대한 월 1회 이상 컨설팅을 통해 단계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단계별 구축 시나리오(안) >

단계	1단계-기반구축 <담당자지정/사전교육>	2단계-현장안착 <담당자 역할수행>	3단계-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경영자리더십>
주요 수행 내용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미션부여 -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별로 담당자 지정, 명확한 미션 부여 ▶ 안전보건교육·훈련 -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상시교육 실시	▶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 담당자 조치사항 지속적 숙지 - 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 1차진단 실시(담당자 1:1 컨설팅 후 자체 진단 시행) ▶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관리체계 직접 설계 지원	▶ 경영자 리더십 계발 -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심 유도 -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안전 투자 ▶ 근로자 참여 - 안전제안제도 운영 - 위험성평가 참여